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2000. 8. 3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등 동 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구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보강하는 한편, 건축·위생업소영업허가 기능 등 핵심 허가 민원처리의 일원화를 위한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간은 2001. 6. 30까지로 함.

(안 제5조제1항)

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중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은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함(안 부칙제2조제2항)

다. 도시국 소관 “건축과”의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카. 사회산업국의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장 설립승인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의 분장사무로 함(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의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의 분장사무로 함(안 제7조제2항)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및제6조

나.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및 허가전담과설치 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총무과, 재무과”를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며,
동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4.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도가공업소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 제5조제1항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1. 6. 30일까지로
한다.

②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중 제6조제2항제4호중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p>
<p>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p>	<p>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를 둔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11. (생략)</p>	<p>1~11.(현행과 같음)</p>
<p><신설></p>	<p>12. <u>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13. <u>공장설립승인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14. <u>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신고에 관한 사항</u></p>
<p>12. (생략)</p>	<p>15. (현행 제12호와 같음)</p>
<p>13. (생략)</p>	<p>16. (현행 제13호와 같음)</p>
<p>14. (생략)</p>	<p>17. (현행 제14호와 같음)</p>